# 안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안 번호 | 1352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1.5)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재산세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내지 제24조, 제24조의3 내지 제24조의 5, 제26조).

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분리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149제곱미터까지, 매입임대는 85제곱미터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안 제24조의2).

## ❑ 개정조례안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8조 내지 제9조, 동법 제180조 내지 제18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 주택법 제9조

○ 임대주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9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5. 30. ~ 2005. 6. 8.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7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를 각각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 하고, "건축물"을 각각 "주택"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

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 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 으로 한다.

제17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 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를 "재산세"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를 “재산세” 로 한다.

제21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를 “재산세” 로 한다.

제23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 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를 “재산세” 로 한다.

제24조의2중 “ 1,000분의 3” 을 “ 1,000분의 1.5” 로 한다.

제24조의3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 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를 삭제한다.

제24조의4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 로 한다.

제24조의5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재산세의 100분의 50” 으로 한다.

제26조중 “종합토지세” 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로 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 소관 실·과 | | 세 정 과 |
|---|---|---|
| 입 | 실·과장<br>직위·성명 | 세정과장<br>이 봉 재 |
| 안 | 담당·팀장<br>직위·성명 | 세정담당<br>서 근 식 |
| 자 | 담 당 자<br>성명·전화 | 김 복 수<br>(행정 2196)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감면) ①----------재산세----------재산세---------- |
| ②~③(생략) | ②~③(현행과 같음) |
|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주택----------재산세---------- |
|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재산세---------- |
|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의 100분의 50----------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8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br>---------- 재산세<br>----------<br>----------<br>----------<br>----------<br>----------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br>----------재산세<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 2. ----------건축물 및 주택----------<br>----------<br>----------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br>----------재산세의 100분의 50---------- |
|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 |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br>----------<br>----------<br>----------<br>----------<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br>----------<br>----------<br>----------<br>----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주택----------<br>----------<br>---------재산세--------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 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②----------<br>----------<br>----------<br>----------<br>----------<br>----------<br>----------<br>----------<br>----------<br>----------<br>----------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주택----------<br>----------재산세------ |
|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 |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 〈 신설 〉 |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br>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br>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감면) ①----------재산세의 100분의 50---------- |
|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재산세의 100분의 50----------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한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br>----------<br>----------<br>----------<br>----------<br>----------<br>----------<br>----------<br>----------<br>----------<br>----------<br>------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 ------- |
|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br>----------<br>----------<br>재산세----------<br>------- |
|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 |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재산세 ---------- |
|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②---------- ---------- ---------- ---------- ---------- ----------<삭 제>-- ---------- ---------- |
|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을 경감한다. |
|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br>----------<br>----------<br>----------<br>----------<br>----------<br>----------재산세 --<br>----------<br>----------<br>----------<br>---------- |
|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br>----------<br>----------<br>----------<br>----------<br>----------<br>----------<br>----------<삭 제>---------<br>---------- |
|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br>----------<br>----------<br>----------<br>----------<br>----------<br>----------<br>재산세----------<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br>----------<br>----------<br>----------<br>----------<br>재산세---------- |
|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br>----------<br>----------<br>----------<br>----------<br>----------재산세-----<br>----------<br>----------<br>---------- |
| 제2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적용한다. | 제2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br>----------<br>----------<br>----------<br>----------<br>----------<br>----------<br>----------<br>----------<br>----------<br>----------<br>----------1,000분의 1.5-------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안산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재산세---------- ---------- ---------- ---------- <삭 제>---------- ---------- ---------- |
| 1. ~ 2.(생 략) | 1.~ 2.(현행과 같음) |
| 제24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제24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 ---------- ---------- ---------- ---------- 재산세 ---------- |
| 제24조의5(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 제24조의5(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의 100분의 50 ---------- |
|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 |
| 〈 신설 〉 |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시행규칙) (현행 제30조와 같음) |